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637	
최초 등록일	2020.05.26	최종 등록일	2024.09.05

# [효선기보] 정 보 공 개 서

[(주)재복]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주)재복]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055-367-6271	팩스번호	055-367-6277	
가맹사업담당부서	가맹사업팀	가맹사업담당번호	055-367-6271	
주소	경산남도 양산시 물금읍 학산 2 길 15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주)재복	영업표지	효선기보
법인설립등기일	2020 년 2월 11일	법인등록번호	234111-0112444
사업자등록일	2020 년 2 월 11 일	사업자등록번호	344-81-01683
주소	경산남도 양산시 물금읍 학산 2 길 15	대표자	이재근
대표전화번호	055-367-6271	대표팩스번호	055-367-6277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 년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효선기보	경산남 <b>5</b>	E 양산시 물금읍 학산	2길 15
특수관계인(임원)	㈜재복 / 이재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재근	055-367-6271	055-367-6277
			경산남 <b>5</b>	E 양산시 물금읍 학산	2길 15
특수관계인(임원) ㈜재복 / 최영선	㈜재복 / 최영선	효선기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재근	055-367-6271	055-367-6277

<sup>☞</sup>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해당되는 회사나 개인 중,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서 바로 전 3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효선기보	
상호	효선기보 OO 점	
상표 (서비스표)	孝膳	효선기보 로고

광고 (캐릭터 등)	
그 밖의 영업표지, 간판로고 등	

#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점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5.806	30,715	-24,908	0	-15,721	-15,721
2022 년	6,804	41,994	-35,190	0	-10,281	-10,281
2023 년	5,817	49,700	-43,822	0	-8,692	-8,692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효선기보 가맹사업 외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어보 서명					개인별 사업경력	
관련여부	성명	현 직위	사업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이재근	대표이사	2020.02 ~ 현재	㈜재복 대표이사	㈜재복 사업 총괄	
관련 임원	최영선	감사	2020.02 ~ 현재	㈜재복 감사	㈜재복 감사 총괄	

#### 7. 바로 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시점	임원수	·(명)	지의스/명\	
기군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 년 12 월 31 일	2	0	0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효선기보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효선기보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및 권리	기내용 권리내용	출원일 및 등록일	출원번호 및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인)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	-----------------------------	--



상표 / 서비스표

출원일 : 2022.10.25

출원번호 : 4020220194107

출원중이므로 등 이재근 존속기간 만료일 기재할 수 없음.

- \* 당사는 위의 지식재산권을 소유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권리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브랜드명입력'과 관련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 시작일

정보공개일 현재 당사의 효선기보의 직영점과 가맹점은 없습니다.

# 2. 효선기보의 연혁

효선기보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비고
(주)재복	효선기보	이재근	2023.01.01~ 현재	경산남도 양산시 물금읍 학산 2 길 15	영업표지 변경
(주)재복	언덕집	이재근	2015.11.23~ 2023.01.01	경산남도 양산시 물금읍 학산 2 길 15	-

#### 3. 효선기보의 업종

효선기보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 II 기 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효선기보	한식	추어탕		

####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효선기보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효선기보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TICH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지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1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1	1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효선기보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효선기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간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한 가맹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0	1	0	0	0	1
2022 년	1	0	0	1	0	0
2023 년	0	0	Z-0 =	0	0	0

# 6. 효선기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효선기보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효선기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484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μt
지역	2023 년말	연간 평	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산출 가맹점수
	가맹점수	평균 매출액	면적 3.3 m²당	최고 매출액	면적 3.3 m²당	최저 매출액	면적 3.3 m²당	기장검구
전체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서울	ı			해당없음(기	가맹점 없음)			-
부산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대구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인천	ı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광주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대전	ı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울산	ı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세종	1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경기	-			해당없음(기	가맹점 없음)			-

강원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충북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충남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전북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전남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경북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경남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제주	-	해당없음(가맹점 없음)	-

당사의 효선기보 브랜드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8. 효선기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효선기보 브랜드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효선기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바로 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효선기보와 관련하여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별도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재복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포함기한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평균 3개월 소요
포함마 구성실시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OU 기계를 포표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효선기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5,5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영업개시후	

최초교육비	5,500	지급	가맹계약서 제 8 조 2 항에 따른 반환규정 참고	교육개시후	
-------	-------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과 사유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지급	- 로얄티, 물품대금 등 미지급 - 계약종료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의 미이행 - 계약종료 후 본사가 회수해야하는 물품의 파손 - 기타 가맹계약상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가맹본 부에 지급해야할 채무가 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되지 않음

####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음 내역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구분	예치대상금액
합계	16,000
가맹비	5.500
최초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효선기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각 품목의 세부 내역은 [아.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준면적: 132m²/단위:천원/부가세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m²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인테리어 설비	(협력업체)	88,000	2,200		
간판	(협력업체)	11,000	해당없음		
주방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22,000	해당없음	가맹계약시	소요비용
POS 프로그램	(협력업체)	1,650	해당없음	개별협의	제외 후 반환
기타물품	미지정	2,200	해당없음		
초도물품	가맹본부	8,800	해당없음		
합계	-	133,650	해당없음	-	-
위 표에 기재된 업체와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대가로					

#### 3.3m²을 기준으로 330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위 표의 면적 3.3 m'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m'로 나눈 금액으로, 기준면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에도 면적 3.3 m'당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5) 효선기보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ᄀᄱᅕᄓᄔᄀ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
가맹희망자	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이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8)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지급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9)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시 위약금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귀하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해약 요청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지급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계약 체결 또는 금전지급일로부터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계약 체결 또는 금전지급일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대상금액의 100%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교육이 시행된 뒤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귀하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하고자하는 경우,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반환되지 않는 교육비와 별개로 위 표의 기준에 따라 당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금전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점포가 개업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를 일방적인 해약으로 보며 귀하는 위의 표의 기준에 따라 당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지급대상자	금 액 및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2% (POS 기준)	매월 5일	로열티는 이전 달의 영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반환되지 않음.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V.9.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분담 기준] 참조.	광고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판촉 및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개점 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교육실시기간, 항목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개별 협의	실비로 반환 안됨
POS 사용료	POS 업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점포환경 개선비용		[VII.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개별 협의	반환되지 않음
배달어플 사용료	(협력업체)	지역 및 매장상황에 따라 최소 범위를 책정하여, 이를 가맹계약서상 표기하여 협의할 예정. 범위에 대한 금액은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반환되지 않음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 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귀하의 점포의 전산 매출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갱신비	2,200	계약연장(갱신) 30 일 이전	반환되지 않음	
합계	2,200	「東間	E C	

<sup>\*</sup>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혐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 사업자는 아래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600				
양수가맹비	3,300		가맹계약서	영업개시후	
양수교육비	3,300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제 8 조 2 항에 따른 반환규정 참고	교육개시후	
양수보증금	5,000	지급	가맹계약 해지 시 반환	귀책사유 발생시 상계후 반 환	[IV.1.2]보증금 항목 준용

#### 3)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효선기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 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14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철거 및 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며, 철거 및 원상회복 결과를 당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당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원상회복에 관한 결과를 통하여 철거•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영업표지의 철거 등을 확인한 후 당사는 잔존 채무 및 위약벌 등의 손해배상 비용을 상계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하는 계좌(가맹점사업자 명의)로 30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라. 가맹점사업자는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당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마. 가맹본부가 공급 또는 제공한 품목은 가맹본부의 조치(품목반환 및 품목처분 등)에 따라야 합니다.
- 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사. 가맹점사업자는 협력업체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품목 등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품목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의 가액으로 "가맹본부"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상응하는 금전의 가액"은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 시장가를 의미하며, 가맹본부가 이를 산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의 브랜드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효선기보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효선기보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효선기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나.

다. 당사가 효선기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 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효선기보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2 메뉴판 참고>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또는 알선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추어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	효선기보	해당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1,0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계약서 별지에
0)C 224 084 142 1144 084 144 414 114 114 114 2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	영업지역 표시,
비롯하여 계약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6조를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또한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인지에 위치하는지의	참고.
여부는 별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음.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ol> <li>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li> <li>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 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와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 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

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이후 영업지역 조정 노력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효선기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타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 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 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첫째, 가맹점사업자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야 합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효선기보의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효선기보의 직전 사업연도 국내 판매 매출액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0	0	0	0

- \* 당사의 효선기보의 브랜드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 및 직영점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효선기보의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효선기보의 직전 사업연도의 국내 판매상품에 중 온라인 전용상품과 오프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 당사의 효선기보의 브랜드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용상품이 없습니다.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 1) 가맹계약기간

효선기보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갱신시에는 Ⅳ.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3. 계약종료후의 부담에 기재된 갱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b>day)</b> D-180 ~ D-90
-		
2.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15일 이내
	→A)	1.32   1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	
	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갱신비 납부 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갱신비 납부 후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갱신비를 지급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 2항 각호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20   =
효선기보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	
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ro 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 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기	<b>계약조문</b>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 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1항~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조1항	
가맹점사업자가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래처권장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래처강제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5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5항	각호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9항	31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1호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7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조2항~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 하는 경우	30조7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2	21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	1항2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31조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항 ①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각호 ②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처분 ③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31 조 3 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 통보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60일 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상속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대행 및 위탁자에게 당사의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당사에게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한 뒤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하고 당사에게 교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가맹점 영업의 상속을 희망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본부 승인 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신청 -> 당	(필요시)
대리행사	가능	한 범위 내의 권리의	사 담당팀 검토 -> 대리행사 여부 통지 -> 필수	교육수료 및 교육비
	∕1 <del>0</del>	무	교육 수료 (필요시)	지급
	ᆸᆸᄉᇬᅬ	가맹점사업자가 위탁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신청 -> 당	(필요시)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한 범위 내의 권리의	사 담당팀 검토 -> 업무 위탁 여부 통지 -> 필수	교육수료 및 교육비
가능		무	교육 수료 (필요시)	지급
	상속 후 1개월		기메립티에 나며토기	교육수료
상속	상속 이내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및 교육비 지급

###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1)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 후 2 년동안 지역을 불문하고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효선기보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효선기보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추어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경업 시작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효선기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21.00	매월 월별 28일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26조를 참
11:00 ~ 21:00	(단, 2월은 25일 이상)	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③ 영업시간은 가맹계약 체결 전, 당사와 협의가 가능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협의한 영업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홀 및 주방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상시 인원을 3인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 • 감독 항목	목 감독 절차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수시	
매성 성설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ナハ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수시	
제품의 표판회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완료	十八	
DOC II 8	담당자 매장 방문→POS사용 상태점검→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		
POS사용	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교고 서경	부담비율		BCMT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공동광고 공동판촉 공동판촉	상품, 브랜드, 가맹점 모집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전체 가맹 점이 균등하게 부담)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담액 통지(광 고1개월 전)→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 입
		순수 가맹점모집광고	100%	-	-
		행사에 따라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달라짐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sup>\*</sup>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의 공동광고 또는 공동판촉행사를 집행시, 사전에 명칭 및 실시시간, 비용 분담비율, 비용 분담한도 등을 기재하여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따라 광고 또는 판촉의 집행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전체 가맹점사업자수 인원의 50% 이상이 동의(판촉행사의 경우 전체가맹점사업자 수의 70% 이상)하는 경우, 귀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집행하고, 그 분담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 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및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 18 조	가맹계약서
(경업금지 의무) 제 1 항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귀하가 거래처강제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거래처강제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일백만원	게 그 그 프 게 그렇
(₩1,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100,000)씩 당사	제33조 제2항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거래처권장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메뉴 이외의 메뉴를 판매할 경우 【냉장고 보관 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일	게 그 그 때 그 후니
백만원(₩1,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100,000)	제33조 제3항
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을 존속할 수 없는 해지 사유(즉시해지사유 포함)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서 [잔존개월 X 직전 개월 당사에게 지급해야할 로열티로 책정된 금액 X 2 배]를 지급	게 2 2 - 기 4 취
하여야 한다. 또한 귀하가 제 7 조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 또는 양도하고	제33조 제4항
자 하는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협의된 철거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고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귀하는 협의된 철거기한의 익일부터 위약벌	제33조 제5항
로 1 일 금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	- 기
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6항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게 이 그 게 그십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7항
제 1 항 내지 제 8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	
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8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15%)의 지연이자를	제37조 제1항
가산한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55-367-6271)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가맹점 확인	14 일 이상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계약서 검토	14 일 이상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참조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10 일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D-day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ㆍ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사유	ㅇ위생, 안전의 결함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
	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o간판교체 비용
	o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비용항목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비용비율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 합의시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TI그저+L	o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
지급절차	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ĺ	비오버다 레이티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비용부담 제외사	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유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 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선기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신규교육	운영, 상품 교육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i i				
	식 매잔에서이 서비스 반변	시스ㄱㅇ	가맹계약체결 후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결합교육	1 개월이내	

- \* 상기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효선기보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개별협의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10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협의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u>게</u> 쓰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1 명, 필수)이며, 추가 인원은 협의를 통해 교육·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시, 당사와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맹점사업자 대신 타인이 교육·훈련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당사의 효선기보 브랜드는 직전 사업연도 운영한 직영점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1670-0007)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 < 별첨 1 >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23 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22 년-2021 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23 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22 년-2021 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첨부 1.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첨부 2. 수령확인증 (가맹본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첨부 3. 수령확인증 (가맹희망자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